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[현옥순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8-141

발의년월일 : 2019. 3. .
발 의 자 : 현옥순 의원 등 15명

1. 개정이유

○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보육실 추가와 일시보육서비스를 구체화 하였고, 센터운영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개원 준비금 지원 등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보육실 설치운영 (안 제13조제2항)
○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의 구체화 (안 제14조제14호)
○ 육아종합센터의 계획에 주민참여 의견청취 (안 제19조의2)
○ 신규설치시립어린이집의 준비금지원 근거마련 (안 제 29조제1항)

3. 일부개정 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발췌서 등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6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입법예고 : 2019. 3. 11. ~ 2019. 3. 18.(7일간)

7. 부서의견 : 의견없음

8. 기타 참고사항 : 타시군 조례

【붙임1】

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센터에는 자료실, 상담실 및 교육실, 보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.

제14조 제1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4. 어린이집이용 아동이 감염병 등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등원이 불가한 직장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 서비스 등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

제19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19조의2 (주민참여)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센터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, 보육교사,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장 보조금의 지급 등

제29조 제1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신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개원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현옥순 대표발의 (행정 3565)
	현 옥순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장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	제3장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
제13조(설치 및 운영) ① (생략)	제13조(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센터에는 자료실,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.	② 센터에는 자료실, 상담실 및 교육실, 보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 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제14조 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~ 13. (생략)	1. ~ 13 (현행과 같음)
14.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	14. 어린이집이용 아동이 감염병 등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등원이 불가한 직장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등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
15. ~ 17. (생략)	15. ~ 17. (현행과 같음)
〈신설〉	제19조의2 (주민참여)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센터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, 보육교사,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제5장 비 용	제5장 비 용
제29조(비용의 보조) ① (생 략)	제29조(비용의 보조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〈신설〉	9. 신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개원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141

제안년월일 : 2019. 4. 2.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○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아동의 전염병 예방에 보육의 서비스를 삭제하고 주민의 참여의식과 시립어린이집 위탁비를 개원전 지급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수정함

□ 주요골자

○ 아동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삭제함 (안 제14조제14호)

○ 위탁비 지급규정을 사전에 지급하도록 함. (안 제29조제1항제9호)

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제14호를 삭제하며,

안 제29조제1항제9호 중 “개원 준비금지원”을 “위탁비 개원전 지급”으로 수정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 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제14조 (기능) ----------
1. ~ 13. (생략)	1. ~ 13.(원안과 같음)
14. 어린이집이용 아동이 감염병 등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등원이 불가한 직장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등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	< 삭 제 >
15. ~ 17. (현행과 같음)	15. ~ 17. (원안과 같음)
제29조(비용의 보조) ① (현행과 같음)	제29조(비용의 보조) ① (원안과 같음)
1. ~ 8. (현행과 같음)	1. ~ 8. (원안과 같음)
9.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개원 준비금 지원	9. ---------- 위탁비 개원전 지급
② (생 략)	② (원안과 같음)